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위선양자의 영사조력비용 면제〉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호)

2024. 8.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3
2. 주요내용 검토	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년 6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故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에서 드러난 법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故 김홍빈 대장 구조·수색에 들어간 비용 6,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개인 영리가 목적이 아닌데,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의 끈기와 열정에 시민들은 감탄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스포츠 진흥과 인권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기에, 정부는 국위 선양을 이유로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까지 수여했는데, 일방적 구상권 청구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근거 규정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에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입법 취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영사조력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우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내용 검토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당사자인 재외국민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①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인 경우, ②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¹⁾ 재외국민이 영사조력비용을 즉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선지급 하고 향후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법 제19조제3항).

故 김홍빈 대장의 조난사건의 경우 법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²⁾ 에 따라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영사조력서비스를 제공 받음. 그러나 그 대상이 현행법에 따른 무자력이 아닐 뿐 아니라, 해외위난상황³⁾에 처한 경우도 아니므로 국가가 비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①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자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외교부는 구조요청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19조(경비의 부담 등)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였음.⁴⁾

개정안은 故 김홍빈 대장의 사례와 같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⁵⁾에는 영사조력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4) <故 김홍빈 대장 조난 사고 관련 현황>

- (조난사고 발생) 2021년 7월 18일 김홍빈 대장이 해발고도 8,047m의 브로트피크를 정복하고 하산하다 조난사고 발생
- (영사조력 요청) 조난 직후 광주산악연맹 등의 요청에 따라, 주 파키스탄 대사관이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과 베이스캠프에 남은 원정대원 이송을 위한 헬기투입 요청
- (영사조력 비용 발생) 3차례의 헬기투입 등에 약 6,8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광주산악연맹의 비용 지급보증에 따라 외교부가 파키스탄에 선지급한 후 구조비용을 광주산악연맹에 구상권 청구
 - 1회는 故 김홍빈 대장 수색: 약 2,500만원
 - 2회는 등반대원의 베이스캠프에서 시내로 이동: 약 4,300만원
- (소송 진행 중)
 - 2023. 6.23. 1심 원고(국가) 일부승소판결: 수색·구조를 위한 광주산악연맹의 비용 지급보증 약정 존재 인정. 해외위난상황에 안전 대피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한 경우로 보고 상환금액을 약 2,500만원으로 축소
 - 2023. 7. 7. 원고(국가) 항소: 본 사고는 영사조력비용 면제 가능 요건인 해외위난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심이 이를 오인하였기에 항소.

5) 2021. 8. 4. 故 김홍빈 대장 체육훈장 1등급 ‘청룡장’ 추서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는 것으로, 훈장은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15종류를, 포장은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등 12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을 수여받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그 국위선양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영사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상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국위선양자의 공적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재외국민 중 국위를 선양하여 상훈을 받은 사례는故 김홍빈 대장의 사례 외에는 개정안과 같은 재외국민의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움. 개정안은故 김홍빈 대장의 사례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위선양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훈·포장 수여 외에 다른 기준이 없어 국가로부터 비용 부담을 받기 위해 역으로 훈·포장의 수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상훈이 왜곡되어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경비부담에 관한 적용례)는 故 김홍빈대장 사건에 소요된 영사조력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규정을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소급하고 있음. 2021년 4월 20일은 영사조력법의 1차 개정일이고 영사조력법 첫 시행일(2021년 1월 16일)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면 그 적용일을 2021년 1월 16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칙 제2조(경비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1년 4월 20일</u>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경비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21년 1월 16일</u>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263

[참고자료]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1. 훈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의 종류	등급별 명칭
가. 무궁화대훈장	
나. 건국훈장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
다. 국민훈장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2등급: 국민훈장 모란장 3등급: 국민훈장 동백장, 4등급: 국민훈장 목련장 5등급: 국민훈장 석류장
라. 무공훈장	1등급: 태극 무공훈장, 2등급: 을지 무공훈장 3등급: 충무 무공훈장, 4등급: 화랑 무공훈장 5등급: 인현 무공훈장
마. 근정훈장	1등급: 청조 근정훈장, 2등급: 황조 근정훈장 3등급: 홍조 근정훈장, 4등급: 녹조 근정훈장 5등급: 옥조 근정훈장
바. 보국훈장	1등급: 보국훈장 통일장, 2등급: 보국훈장 국선장 3등급: 보국훈장 천수장, 4등급: 보국훈장 삼일장 5등급: 보국훈장 광복장
사. 수교훈장	1등급: 수교훈장 광화대장, 수교훈장 광화장 2등급: 수교훈장 흥인장, 3등급: 수교훈장 숭례장 4등급: 수교훈장 창의장, 5등급: 수교훈장 숙정장
아. 산업훈장	1등급: 금탑 산업훈장, 2등급: 은탑 산업훈장 3등급: 동탑 산업훈장, 4등급: 철탑 산업훈장 5등급: 석탑 산업훈장
자. 새마을훈장	1등급: 새마을훈장 자립장, 2등급: 새마을훈장 자조장 3등급: 새마을훈장 협동장, 4등급: 새마을훈장 근면장 5등급: 새마을훈장 노력장
차. 문화훈장	1등급: 금관 문화훈장, 2등급: 은관 문화훈장 3등급: 보관 문화훈장, 4등급: 옥관 문화훈장 5등급: 화관 문화훈장
카. 체육훈장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2등급: 체육훈장 맹호장 3등급: 체육훈장 거상장, 4등급: 체육훈장 백마장 5등급: 체육훈장麒麟장
타. 과학기술훈장	1등급: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등급: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3등급: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4등급: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5등급: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2. 포장의 종류 및 명칭

- 가. 건국포장
- 나. 국민포장
- 다. 무공포장
- 라. 근정포장
- 마. 보국포장
- 바. 예비군포장
- 사. 수교포장
- 아. 산업포장
- 자. 새마을포장
- 차. 문화포장
- 카. 체육포장
- 타. 과학기술포장